내 부 통 제 규 정

목 차

제1장 총칙	·· -1
제1조 목적	 −1
제2조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과의 관계	 −1
제3조 용어 정의	·· -1
제4조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 -1
제5조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원칙	·· -2
제2장 내부통제 관리 조직	·· -2
제6조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책임	 −2
제6조의2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 -3
제7조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역할 및 책임	·· -3
제8조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3
제9조 내부감사의 역할 및 책임	·· -4
제3장 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절차	··-4
제10조 내부통제체계 운영계획 수립	·· -4
제11조 정보 및 의사소통	·· -4
제12조 업무 프로세스 문서 관리	·· -4
제13조 위험 식별 및 평가	·· -4
제14조 통제활동 설계 및 평가	·· -5
제15조 통제활동의 운영	·· -5
제16조 정기적인 통제자체평가의 수행	·· -5
제17조 내부감사에 의한 평가	·· -5
부 칙	··-6

내부통제규정

2022.12.29. 제정(규정 제1401호) 2023.12.14. 일부개정(규정 제1449호) 2024.12.30. 일부개정(규정 제1492호) 2025.03.06. 일부개정(규정 제1503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위험 통제에 대한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과의 관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내부 통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내부통제"라 함은 공단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미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책무성 의무를 이행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자원을 보호할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고 임직원모두에 의해 실행되는 통합적 과정을 말한다.
 - 2. "내부통제체계"라 함은 부서 또는 개인 단위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내부통제를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내부통제에 소요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미인지 또는 미대응 분야의 내부통제 위험에 대하여 중복·누락 없는 위험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3. "통제자체평가"라 함은 공단의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가 해당 업무 프로세스의 활동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현재 상태의 통제장치를 파악하고 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위험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4.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라 함은 제7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내부 통제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5.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라 함은 제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위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를 계획·집행·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 제4조(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일차적 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상 법적 위험과 관련된 법규,

제규정 및 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원칙) ① 공단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내부통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사 또는 단위부서 수준에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1. 운영 측면: 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 확보
 - 2. 회계 및 정보측면: 회계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및 적시성 확보
 - 3. 법규준수 측면: 관계법령, 제규정 및 절차 준수 확보
 - ② 공단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사 또는 단위부서 수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잠재적인 이해상충이나 실수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고 적시에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업무 분장, 2개부서 이상이 연관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단위업무 수행 절차 상 담당자별 수행 업무와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 3. 단위업무 수행시 해당 업무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단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고, 공단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내부통제를 설계 및 적용하여야 한다.
 - 4. 신규 사업 진출 등 새로운 업무가 추진되는 경우,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 내부통제체계의 적정 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 5. 관계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관련 내용이 신속 정확하게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 제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 관리 조직

- 제6조(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책임) ①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은 본사군과 자동차안전연구원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12.14.>
 - 1. 본사군: 직제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각 본부의 장 <개정 2025.03.06.>
 - 2. 자동차안전연구원군: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및 부원장 <개정 2025.03.06.>
 - ③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내부통제위원회의 간사는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④ 내부통제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내부통제체계 운영 관련 정책 결정 및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2. 내부통제체계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결정
- 3. 임직원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노력
- 4. 내부통제체계 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활동 등
- ⑤ 내부통제위원회의 간사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 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 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비공개로 한다.
- ⑥ 삭 제 <2023.12.14.>
- ⑦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 위원은 이해충돌 방지 및 비밀 이용·누설 금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 1.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장에 따른 제한·금지 행위 확인 및 해당 사항의 신고·제출처리
- 2. 직무수행에 따른 비밀누설 이용·금지 서약(별지 제1호 서식)
- **제6조의2(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① 내부통제위원회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본사군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시 위원장이 부재중인 경우「직제규정」별표 1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내부감사 및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내부통제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본조신설 2023.12.14.]

- 제7조(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역할 및 책임) ①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는 전반적인 내 부통제체계 운영을 총괄하며 전사 또는 단위부서 수준의 통제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 ②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주요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내부통제체계의 운영계획 수립
 - 2. 내부통제체계, 프로세스, 위험, 통제활동, 통제자체평가 등에 대한 설계 평가
 - 3. 통제자체평가 활동 지원
 - 4. 통제활동 적정성 관리
 - 5. 「내부통제규정」 및 이 규정의 운영매뉴얼 관리
 - 6.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교육
 - 7.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이사장 또는 내부통제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및 관리
- 제8조(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① 전사적인 내부통제체계의 원활한 운영

- 을 위하여 각 단위부서의 장은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지속적인 통제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의 주요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각 부서원들에 대한 내부통제 교육
- 2. 각 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기술서 및 업무흐름도 최신화
- 3. 업무 프로세스별 위험 식별 및 평가 수행
- 4. 통제활동의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
- 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
- 제9조(내부감사의 역할 및 책임) ① 내부감사는 전사 또는 단위부서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내부통제가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내부통제체계 운영과 관련된 내부감사의 주요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일상감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 적정성 상시 점검
 - 2. 위험 변화에 따른 일상감사 및 상시 모니터링 활동 개선
 - 3. 통제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성과감사 수행

제3장 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절차

- 제10조(내부통제체계 운영계획 수립)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은 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에 대한 운영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 및 의사소통) 내부통제 관리부서의 장은 이사회와 임직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공단의 비전,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2조(업무 프로세스 문서 관리) ①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은 주요 업무기술서 및 업무흐름도가 현재 시점의 업무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변경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한 최신화 작업을 권고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의 권고를 받은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는 주요 업무기술서 및 업무흐름도가 현재 시점의 업무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변경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업무의 변경 또는 조직 개편 등에 의하여 업무의 담당부서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된

경우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는 이를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은 「직제시행세칙」의 분장업무에 근거하여 해당 업무 의 담당 부서를 식별한 후 제1항에 따라 권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험 식별 및 평가) ①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는 위험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재평가를 권고하여야 한다.
 - ②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는 위험에 대한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세부 위험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은 위험에 대한 변경 작업이 완료된 이후 각 위험 별로 영향과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위험 크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험 평가 기준 및 세부사항은 내부통제 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통제활동 설계 및 평가) ①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은 위험에 대한 평가 완료 이후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통제활동이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통제활동의 추가나 기존 통제활동의 삭제 또는 변경 필요성이 식별된 경우 이를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내부통제 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③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는 통제활동에 대한 설계 요청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한 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의 장은 통제활동에 대한 설계 작업이 완료된 이후 각 통제활동 별로 활동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활동에 대한 설계 평가 기준 및 세부 사항은 내부통제 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통제활동의 운영)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는 업무 수행시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통제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통제활동의 주요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령의 준수 여부 확인
 - 2.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 3.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의무 등 윤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4. 재무 및 회계처리의 정확성 확인
 - 5. 안전사고 예방 준수 여부 확인

제16조(정기적인 통제자체평가의 수행) ① 부서별 내부통제담당자는 제10조에 따른 운영

계획에 따라 내부통제 운영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자체평가를 수행한다.

- ② 세부 통제자체평가 방법론, 운영 효과성 평가, 위험 평가 항목 등은 내부통제 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내부감사에 의한 평가) ①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성과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각 단위부서의 장에게 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단위부서의 장은 그에 대한 시정계획을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계획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규정 제1401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호에 따른 내부통제체계 관리부서는 「직제시행세칙」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 감사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부 칙 <규정 제1449호, 2023.12.1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92호, 2024.12.30.>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03호, 2025.03.06.>

이 규정은 2025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내부통제규정[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신설 <2024.12.30.>

서 약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상기 본인은 내부통제 위원회에서 논의된 위험요인 관리 및 통제·점검사항, 기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누설치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시 어떠한 법적 책임·처벌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